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6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 맹성규·박균택·이성윤

윤종군 • 박용갑 • 김남희

손명수 • 황명선 • 박희승

박주민 · 김태년 · 권향엽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

본래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특별시·광역시 내다른 기초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해당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겪는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 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 함(안 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아닌 인접한 지역에도 다음 각 호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
용 등) ① (생 략)	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2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	
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	
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
	요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
	획구역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아닌 인접한 지역에
	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
	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